

(2) N-아세틸글루코사민,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식물스타놀에스테르 등 4종의 사용량 및 섭취량 제한을 통한 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로 인정

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부칙 제2조)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45호, 2009. 6. 30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면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

(1) 면류 중 국수, 냉면, 당면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부칙 제2조)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47호, 2009. 7. 3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8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항목에서 제외하고 위해항목 위주로 개선함.

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서 성장 등을 검사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

식품군	유형	검 사 항 목
1. 과자류	과자	산가 (유당처리식품에 한한다)
		세균수 (밀봉제품에 한하며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아플라톡신 B1·B2·G1·G2(땅콩 또는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캔디류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세균수 (밀봉제품에 한하며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아플라톡신 B1·B2·G1·G2(땅콩 또는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압착강도 (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추잉껌	허용외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빙과류	세균수 (유산균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대장균군
	2. 빵 또는 떡류	빵류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살모넬라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떡류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만두류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릿류 ~ 29.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및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 (생략)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